

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(안)

1. 主要 法的根據

◎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(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,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 년도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